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18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제출자)	(제출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13호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2024.09.2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 차 전체회의(2024.12.06.)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제5892호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4.11.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2.08.)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9.)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0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 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 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법률 제 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거나" 로, "제외한다)와"를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 사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 략)	제3조(처벌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②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	
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	
(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	
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	
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	
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	
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	
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	
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u>아</u>	<u>o}</u>
<u>니한 경우</u> (운전자가 채혈 측정	<u>니하거나</u>
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략)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 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u>방해행위를 한 경우와</u> -----

1. ~ 12. (현행과 같음)